

2023 한화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자료

Retirement Pension Guide

※ 이 책의 내용은 당사 한화투자증권이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낸 것이거나 그 정확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간행물은 고객의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이용될 뿐,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간행물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은 2022.07.12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이하 법령의 개정 및 후속조치에 따라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시 또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등 세제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에서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 자산은 환율 변동시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으며, 투자대상 국가의 정치 경제상황, 물가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별특징 및 차이점
- 퇴직연금제도별수급요건

02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 퇴직연금중도인출 · 담보대출
-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DC)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퇴직 시 급여 지급 절차 및 개인형 IRP 로의 적립금 이전
- 퇴직연금 과세 체계
- 퇴직연금 중단 및 폐지
- 퇴직연금 계약 이전

03

자산 · 부채관리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

- 생애주기별 목표 관리

04

적립금의 운용

- 안정적 투자 원칙
- 적립금 운용 방법
- 상품별 보수/수수료
- 상품 매도 관련 사항
- 디폴트 옵션(사정지정 운용제도) 안내

05

온라인 서비스 이용방법

-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 한화투자증권 Smart M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로 교육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퇴직급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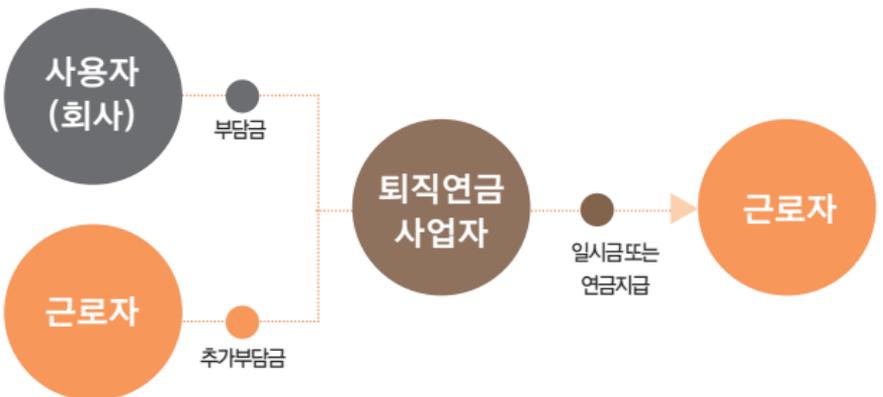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주1)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금융기관이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운용주체

확정급여형(DB) : 회사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가입자(근로자)

※ 가입자 부담금의 경우 DC · IRP만 납입 가능. 자세한 사항은 16페이지 확인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계속근로연수)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DC수수료 부담주체 및 취득방법

DC제도에 납입하는 사용자부담금은 회사가 수수료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추가로 DC제도에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 납입액에 대한 수수료는 퇴직연금 규약에 정해놓은 주체가 부담합니다.

부담금종류	부담주체	취득방법 ^{주)}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현금 별도납
가입자부담금	규약에따름	사용자: 현금 별도납 가입자: 적립금 차감

주) 연회회 후취

표준형확정기여형(표준형DC)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DC제도와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나, 표준형DC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규약을 사용합니다.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① DC제도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
- ②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③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④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 ⑤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⑥ 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 ①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②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③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해지·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혼합형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DB·DC제도를 함께 설정하여 한 근로자가 두 제도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DB제도의 급여는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DC제도의 부담금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수준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각 제도별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을 만 55세 이후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운용기간동안 운용수익에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되며, 가입자 부담금의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주1)} 할 수 있습니다.



주1) 법정 중도인출 사유 및 필요 서류의 경우 10페이지 '퇴직연금 중도인출·담보대출' 확인

개인형IRP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등) 및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IRP 제도에 가입할 수 있음 (2017.7.26 개정 시행령 시행)

**퇴직급여·퇴직금
일시금수령자**

단, 퇴직급여 수령 60일 이내

**DB·DC,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가입자**

직역연금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가입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개인형IRP 부담금

개인형IRP의 적립금은 가입자 부담금과 퇴직급여로 구성됩니다.
가입자 부담금의 경우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주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1) 가입자 부담금의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의 경우 16페이지 '세액공제 혜택' 확인

개인형IRP 의무이전

퇴직급여가 연금수급 개시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로의 이전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단, 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형IRP로의 이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의무이전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2012.7.26 시행되었으며, 퇴직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2022.4.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형IRP 이전 시 효과

- 절세효과: 개인형IRP에서 연금 수령할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효과: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IRP로 이전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징수가 이연되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징수시기를 인출 시점으로 이연함으로써 투자원금이 증대되어 더 많은 투자수익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의 지속적인 운용가능: 한화투자증권DC가입자가 한화투자증권IRP로 이전 시 퇴직 전 본인이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환매없이 그대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상품은 환매하여 이전)

퇴직연금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구분	DB	DC	개인형 IRP
부담금	최소적립금 ^{주1)} 과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가입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퇴직급여 이전액 또는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	납입 불가	납입 가능	
운용 주체	사용자	가입자	
퇴직 급여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부담금 + 운용손익	
담보 대출	법정사유 충족 시 적립금의 50%까지 가능		
중도 인출	불가	법정사유 해당 시 중도인출 가능	

주1)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책임준비금에 60%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2022년 이후 적립비율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퇴직연금제도별 수급요건

급여종류	제도	수급요건
연금	DB, DC 기업형 IRP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
	개인형 IRP	55세 이상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
일시금	모든제도	연금수급요건 미충족 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DB, DC, 기업형 IRP의 경우 퇴직 시 개인형 IRP로 의무이전 해야하므로 실질적인 연금의 지급은 개인형 IRP에서 이루어집니다.

02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퇴직연금 중도인출·담보대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사유 충족 시 퇴직급여를 재직 중에 인출하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DB는 중도인출 불가)

NO.	법정사유	중도인출	담보대출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Y	Y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Y	Y
3	가입자가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를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Y	Y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Y	Y
5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N	Y
6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N	Y
7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Y	Y
8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Y	N

※ 당사는 현재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보대출 한도: 1~5번의 사유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6~7번의 사유의 경우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 미지급 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중도인출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중도인출 사유별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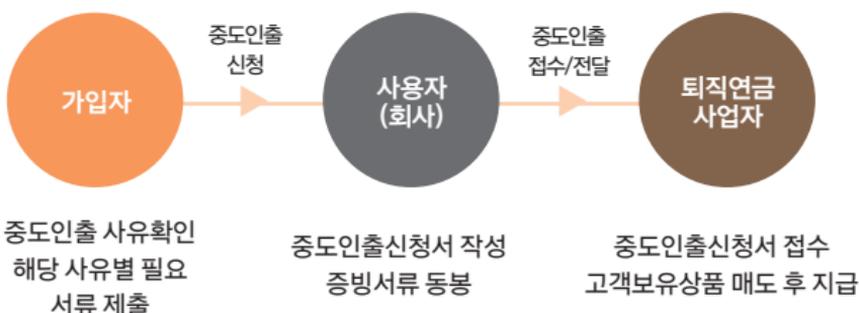
■ 중도인출 가능 제도: DC, IRP

■ 제출 서류: 당사 중도인출 신청서 및 사유별 필요서류

※ 사유별 필요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당사 영업점,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중도인출 사유	필요서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의 건물 등기부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재산세 주택 세목) - 주택 매매 계약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의 건물 등기부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재산세 주택 세목)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입금증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임금총액 증빙 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의료비 증빙 서류 (가입자 본인 부담)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양 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조사확인서 - 사유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중도인출 절차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DC)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납입 예정일 ^{주1)} 다음날	~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주2)} 까지 연 10%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후	~	납입하는 날까지 연 20%

주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 (퇴직연금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주2) 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고정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부담금 산정이 되는 임금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항목	경조금, 위로금, 출장비, 차량유지비 성과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등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수습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 기간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기간 •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업한 기간 등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로의 적립금 이전

퇴직급여가 연금수급 개시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로의 이전을 의무화 주¹⁾ 하고 있습니다.

단, 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형IRP로의 이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체	절차
DB DC 퇴직 급여 지급	퇴직(예정)자	① 금융기관에서 개인형IRP 개설
		② 사용자에게 퇴직 신청(개인형IRP 통장 사본 첨부)
	사용자	③ DB, DC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지급 청구
	퇴직연금사업자	④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상품매도 및 지급
개 인 형 IRP	퇴직연금사업자	⑤ 개인형IRP로 퇴직급여입금
	가입자	⑥ 상품운용지시(필요시 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
	퇴직연금사업자	⑦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신청시)

※ 퇴직연금제도(DB, DC)의 지급 청구는 회사를 통해서 가능
단, 회사가 폐업·도산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형IRP 통장 사본, 폐업·도산 사실 확인 서류, 퇴직 사실 확인 서류,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 등이 필요 (구체적 사유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주1) 개인형IRP 의무이전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2012.7.26 시행되었으며, 퇴직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2022.4.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형IRP로의 의무이전 예외사유

-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② 가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00만원)
- ④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⑥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납입, 운용, 수령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납입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 과세이연
운용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 급여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므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
수령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과세방법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주1)] \div 근속연수 \times 12$$

퇴직소득 산출세액

$$= \{ [(환산급여 - 차등공제 주2)] \times 종합소득세율 주3 \} \div 12 \times 근속연수$$

주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X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X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X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X 300만원

주2) 차등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주3)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0원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연금/일시금 과세방법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

또한, 발생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은 지방소득세 합산으로 표기

소득원천	인출 순서	인출 방식별 과세	
		연금수령 ^{주1)}	연금 외 수령(일시금)
가입자부담금 (세액공제 X)	1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2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X 70%) - 분리과세 - 단,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 시 60%	퇴직소득세 - 분류과세 - 단, 개인형IRP에서 부득이한 사유 ^{주2)} 해당 시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X 70%)
가입자부담금 (세액공제 O)	3	연금소득세 (3.3~5.5% ^{주3)}) - 1,200만원 ^{주4)}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	기타소득세(16.5%) - 분리과세 - 단, 부득이한 사유 ^{주2)} 해당 시 연금소득세 (3.3~5.5% ^{주3)}) 과세
운용수익			

주1)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상 & 가입 후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주2)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⑤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와는 달리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고 과세 종료

주3) 연금소득세율: 만 70세 미만 5.5% / 만 70세~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주4) 24.1.1월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 분부터 1,500만원 적용 예정

세액공제 혜택(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가입자(DC, 개인형IRP)가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 부담금의 경우 연간 1,800만원^{주1)} 한도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9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합산으로 표기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세액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절세금액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148.5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118.8만원

※ ISA 만기계좌 전환 금액(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입 가능) 세액공제 별도,
Min(전환금액의 10%, 300만원)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수령 시(연금 또는 일시금) 비과세됩니다.
-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금융기관에 과세제외금액 전환 신청을 한 경우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부담금의 경우 인출 방식에 따라(연금 또는 일시금) 적용 세율이 differs.
 -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세(3.3~5.5%)
 - 일시금 수령 시 : 기타소득세(16.5%)

주1)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노사 합의 및 회사 사정 등에 따라 중단 및 폐지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도가 중단되는 것으로서, 제도 운영의 핵심사항인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및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제도 운영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의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제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p>사용자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입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게시 ② 가입자 교육의 실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③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p>퇴직연금 사업자 조치사항</p>	<p>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②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③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④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p>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및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의 업무는 이행되지 않음 ② 중단된 기간은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중단 사유가 소멸된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다시 적용됨. 다만, 퇴직연금규약에 제도의 중단기간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제도 운영이 재개된 시점에 납입하여야 함 ③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된 적립금이 가입자에게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될 수 없음

퇴직연금제도 폐지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p>사용자 조치사항</p>	<p>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것 ② 가입자에게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DC 제도 한정)을 통지할 것 ③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
<p>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도 폐지로 지급되는 급여는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②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 기준으로 환산 - DC: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퇴직연금제도의 중단기간 또는 폐지 이후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 계약이전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 후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변경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 사유

1.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
2. DC, 기업형IRP 가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 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DB, 기업형IRP 가입자가 DC로 제도전환하는 경우
4. 계열사 진출입, 합병 등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5.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경우

계약이전 절차



①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 변경

계약이전을 검토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를 통하여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 합니다. 다만, 개인형IRP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계약체결 및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의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이전을 신청합니다.

③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기관으로 가입자 정보를,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을 이전합니다.

④ 퇴직연금제도 운영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합니다.

계약이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보상금 지급

계약이전 신청 시 신청일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에 이전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지연 시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운용관리기관 3영업일 + 자산관리기관 3영업일
(운용관리기관 통지일=자산관리기관 접수일)이므로 최대 5영업일 소요
-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일에 포함하지 않음
- (지연보상금)대상 금액에 대해 초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연이자율 : 14일 이내 연 10%, 14일 초과 연 20%
 -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지급지연으로 인한 펀드가격 하락으로 손실 발생 시 그 손실도 보상

03 자산·부채관리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노후 보장 여력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목표관리

연령대별로 발생하는 이슈에 맞춰 재무목표를 세우고 시기별로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자산과 부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애주기	주요이슈	자산관리예시
사회초년기 20대	졸업, 취직, 결혼준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px;"> 20 80 </div> <p>저축을 최대화하여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p>
가족형성기 30대	결혼생활, 자녀출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px;"> 30 70 </div> <p>수입과 지출이 커지며 부채에 대한 설계 고려</p>
자녀성장기 40대	자녀교육, 재산형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px;"> 40 60 </div> <p>모아 놓은 자산으로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p>
가정성숙기 50대	자녀결혼, 은퇴계획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px;"> 50 50 </div> <p>부채를 상환/축소하고 구체적인 은퇴 준비</p>
은퇴생활기 60대	활동적인 은퇴생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px;"> 60 40 </div> <p>은퇴자산의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필요</p>
노후회상기 70대	여가생활, 봉사활동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px;"> 80 20 </div> <p>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지출 계획 수립</p>
간호시기 80대	황혼기간, 요양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px;"> 100 </div> <p>보수적인 노후 자산 관리</p>

■ 원리금보장 ■ 실적배당

04 적립금의 운용

안정적 투자원칙



투자기간에 맞는 투자

투자기간이 길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때때로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경제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예금이나 채권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투자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이 필수입니다. 경기와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투자를 지속해야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특정 자산에만 투자하기보다 자산의 성격과 가격 움직임이 다른 자산들에 나누어 투자하는게 좋습니다. 지역(글로벌, 국내 등), 자산(주식, 채권 등), 통화(달러화, 원화 등), 투자시점 분산을 통해 투자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배분 예시

투자성향	투자성향별 특징	자산배분(예시)
안정형	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의 손실 발생을 원하지 않음	원리금보장형 100%
안정 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나 배당 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	원리금보장형 80% 실적배당형 20%
위험 중립형	투자에 상응하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일정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	원리금보장형 60% 실적배당형 40%
적극 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	원리금보장형 40% 실적배당형 60%
공격 투자형	시장평균수익률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추구하며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	원리금보장형 20% 실적배당형 80%

적립금 운용방법

투자 가능 상품

구분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
특징	금융기관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	상품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투자원금 손실 발생 가능. 예금자보호 적용되지 않음
종류	정기예금, ELB/DLB, RP, 국채 등	펀드, ETF, 상장 리츠, 회사채 등
투자한도	적립금의 100%	적립금의 70% (단, 법령상 분산투자 등 요건 충족한 펀드/ETF는 100% 가능. 회사채는 발행사별 한도 (30%) 등 제한 존재)

※ 개별 상품은 당사 모바일 앱, 홈페이지,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원리금보장형상품

구분	정기예금	ELB/DLB	RP
제공기관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증권금융	증권사	증권사
예금자보호	가능 ^{주1)}	불가(제공기관의 신용위험 존재)	
중도해지	중도해지금리 적용(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고)		

주1) 퇴직연금(DC, IRP) 정기예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상품 제공기관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 가능합니다.

펀드/ETF

위험자산 투자한도(70%) 예외 상품(예시)

투자한도	대상 상품
100%	1. 채권, 채권혼합형 펀드 - 주식 투자한도 40% 이내이며,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투자한도 30% 이내인 증권형 펀드 2. TDF(Target Date Fund) - 주식 투자한도 80% 이내이면서 투자 목표시점 이후 40% 이내. 투자 부적격 채권 투자한도는 20% 이내이면서, 채권 투자액의 50% 이내
불가	파생형 펀드(위험평가액 40% 이상)는 투자 불가. 단, 합성형 ETF는 가능

ETF(Exchange Traded Fund)

특징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로서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 가능. 대부분의 ETF는 특정 지수(예. KOSPI, S&P500 등)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매매수수료	퇴직연금(DC, IRP) 계좌 내 매매수수료 없음

※ 펀드별 투자위험, 보수 등 주요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특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함
투자한도	적립금의 70%
매매수수료	퇴직연금(DC, IRP) 계좌내 매매수수료 없음
거래시세금	매도시발생 (2023년 기준 총 0.20%)

상품별 보수/수수료

구분	내용
펀드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보수, 환매수수료(일부펀드 해당) 등
ETF	운용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회사보수 등
리츠	리츠의 영업비용 등은 사업보고서에서 확인 가능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원리금보장형	없음

※ 개별 상품의 보수/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당사 퇴직연금에서 환매수수료 부과 펀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상품 매도 관련 사항

구분	내용
펀드	상품별로 환매 기준가 적용일과 환매대금 지급일이 상이함. 일반적으로 해외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일수록 환매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펀드 투자설명서 참고)
ETF, 리츠	주식시장에서 매도 가능. 2영업일 후 현금화
정기예금	오늘(D) 매도 시 다음 영업일(D+1) 현금화
ELB/DLB	상품별 상이(투자설명서 참고)
RP	오늘(D) 매도 시 다음 영업일(D+1) 현금화
장외채권 (국채, 회사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중도 매도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중도 매매시 시장금리 등에 따라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영제도) 안내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DC, IRP)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용지시(금융상품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

퇴직연금 적립금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통한 노후대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도입·정착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등)

가입자의 역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상품^{주1)}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지정해야 하며, DC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된 상품 내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주1)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청한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 결정. 이후 사용자는 승인을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 디폴트옵션 제도에 관한 사항과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DC) 규약에 반영

디폴트옵션 적용 절차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금(부담금) 입금 이후 2주 이내 또는 기존 보유상품의 만기 후 6주 이내에 별도의 상품 매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 적용에 대한 내용은 적립금 입금 다음 영업일 또는 보유상품 만기 후 4주 경과 후 통지드립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한번 디폴트옵션이 적용된 후 입금된 적립금(부담금)은 별도의 통지와 대기기간 없이 디폴트옵션 적용

제도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디폴트옵션 지정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Smart M)

Smart M > 연금/절세 > 퇴직연금 > 디폴트옵션 지정/변경

05 온라인 서비스 이용방법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퇴직연금 잔고/수익률 조회, 상품매매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www.hanwhawm.com

연금				
MY연금 	퇴직연금상품 퇴직연금상품 + 퇴직연금운용가이드 퇴직연금 상품 제언서	퇴직연금매매  퇴직연금상품매매 +  만기상품예약매수 +  퇴직연금ETF/리츠매매 	퇴직연금제도 제도안내 + 도입안내 +	미래설계 미래설계 NOW DC가입자 이용 안내 디폴트옵션 상품안내
MY퇴직연금  퇴직연금잔고  퇴직연금수익률조회  가계내역조회  위험자산투자인도조회 	증명서발급신청  납입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퇴직연금관리 서비스신청/경보변경 + 납입한도조회/변경 +  IRP추가납입 +  IRP 이체 신청/조회 +  IRP 해지/개시신청  해지예상금역조회 	사업자공시 퇴직연금 수수료 +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 약관 사업자 등록내용 적립금 운용공역 및 수익률 + 할리금 보장상품 적용관리 타사 월리금 보장상품 제공상적 수행업무 퇴직연금 공지사항	부가서비스 가입자교육
MY연금저축  연금저축 계약조회 +  연금저축이체 신청/조회 +  연금저축 해지/개시신청  연금저축 리츠 매매 신청/조회 	연금저축상품 연금저축 +	퇴직연금 간편조회		

한화투자증권 Smart M

App Store(애플IOS) 또는 Play 스토어(안드로이드) > 한화투자증권 Smart M 설치



DC가입자 이용안내

한화투자증권 DC에 가입하신 고객 분들이 손쉽게 퇴직연금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등록부터 운용지시까지 가능합니다.

DC가입자온라인등록

한화투자증권 DC 가입 후 SmartM App을 설치하여 DC가입자 온라인을 진행합니다.

DC가입자ID/바이오 등록

한화투자증권 DC 운용 지시를 하기 위해 ID와 바이오정보를 등록합니다.

DC가입자운용지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원리금 보장/실적 배당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합니다.

계좌개설

중개형 ISA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중개형 ISA(일반형) 가입(소득무관, 만19세 이상만 가능)

[중합계좌 + 중개형 ISA](#) [중개형 ISA](#)

퇴직연금(개인형 IRP)
근로자 노후준비와 세액공제 혜택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개설 가능

[필수서류안내](#) [개설하기](#)

연금저축계좌
신규로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및 타 금융기관에 있는 연금저축을 당사로 이전하려는 고객

[이수전용개설](#) [신규개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가입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자로 한화투자증권을 선택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가입자 명부에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만 온라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DC가입자 온라인 확인](#)

STEP 1 고객정보확인

고객정보 입력 및 확인을 합니다.

STEP 2 약관 및 서비스 신청

퇴직연금 거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등 약관에 동의합니다.

STEP 3 비밀번호 설정

사용하실 계좌의 비밀번호를 설정 합니다.

STEP 4 신분증 촬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가능합니다.

STEP 5 추가인증

셀카 촬영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 셀카촬영3회 실패시 1원 송금방식으로 변경됩니다.)

ID등록

ID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신 후 로그인 하시면 퇴직연금 정보, 매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Smart M

고객센터 ▶ 계좌개설 · 아이디
▶ ID/ID비밀번호 ▶ ID등록

Smart M
▶ banking/업무 ▶ 온라인업무 ▶ ID등록

미래설계 NOW

미래설계 NOW가 은퇴 생활의 성공 가능성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딱 맞는 운용전략(Glide Path)을 확인해보세요.
미래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해보세요.

당사 홈페이지 ▶ 연금 ▶ 미래설계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래설계
NOW

당신의 미래가 달라지는 이야기



내 모든
연금찾기



나만을 위한
맞춤설계



가장 쉽고
간편하게

얼마를 저축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할까?

은퇴와 노후 생활은 수십년 동안의 긴 여정입니다.
여행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미래설계 NOW 시작해보세요.



흩어진 연금자산, 한번에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연금포털 스크래핑 기능으로
모든 연금자산을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나만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증상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야합니다.
미래설계NOW는 최첨단 금융공학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나만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한화투자증권 퇴직연금

연금상당 전용창구 080. 851. 75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투자증권빌딩

www.hanwhawm.com